
- 2015년도 4월 본청 재무감사 -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

삼척시
(기획감사실)

- 2015년 4월 본청 -
재무감사 처분요구 목록

연번	제 목
계	8건
1	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
2	인지 소화 부적정
3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4	급량비 집행 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
5	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
6	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
7	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
8	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

【일련번호: 1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3~2014년

【행정상 조치】 시정

【재정상 조치】 추정 105,000원

【제 목】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지급일자	적 요	채 주	지급액	지역개발채권 미소화액
2013. 12. 31.	○○○ 구입비	○○○	1,535	20
2014. 01. 22.	○○○ 수수료	○○○	3,564	85

2. 내 용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·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「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제5조 제1항 [별표1]의 기준에 따르면,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.5/100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.5/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,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천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천 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, ○○○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'○○○ 구입비' 및 '○○○ 수수료'를 집행함에 있어서 각 100만 원 이상이므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역개발채권 105천 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【처 분 요 구】

- 「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 개발채권 105천 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일련번호: 2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5년

【행정상 조치】 시정

【재정상 조치】 추정 20,000원

【제 목】 인지 소화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인지 미소화 내역

(단위 : 천원)

지급일자	적 요	채주	지급액	인지 미소화액
2015. 3. 6.	○○○ 수선	○○○	17,177	20

2. 내 용

「인지세법」 제1조에 따라 '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'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'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,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

에는 4만원,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'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, ○○○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'○○○ 수선' 공사(수선)를 시행하면서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초과이므로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인지 20천 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「인지세법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, 미징구한 20,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3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3년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-

【제 목】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계약현황

연도별	예산과목	집행일자	집행내용	집행금액(원)
2013	부서운영업무추진비	2013.06.13.	○○○ 격려금 지출	100,000

2. 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2013.3.26)의 업무추진비 집행 공통사항 중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격려금, 조의금,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,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, 지급일시, 지급금액, 지급대상자,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, ○○○에서는 '○○○ 격려금 지출'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필히 현금집행 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, 상기 내역과 같이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급일시, 지급금액, 지급대상자,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4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3년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-

【제 목】 급량비 집행 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

연도별	집행일자	집행내용	집행금액(원)	결재방법
계	3건		636,000	
2013	2013.06.05.	○○○ 시간외 급식	78,000	신용카드
"	2013.07.02	○○○ 급식비	152,000	신용카드
"	2013.09.04	시간외 급식(8월)	406,000	신용카드

2. 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2013.3.26) IV.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(201)에 속하는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,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, ○○○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관리비(201.01)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총 3건 636,000원을 현금영수증 카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적용하여 결재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사무관리비(201.01)에 속하는 급량비를 집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5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3. 1 ~ 2015. 4월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-

【제 목】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☆☆☆ 수질검사 집행현황(2013. 1월 ~ 2015. 4월 현재)

집행일	예산과목	적 요	집행금액(원)	비고
2013.01.08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3.02.06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	617,400	
2013.03.05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	3,593,700	
2013.04.04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 (4월)	617,400	
2013.05.14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 5월	617,400	
2013.06.03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 6월분	2,359,600	
2013.07.05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(7월)	617,400	
2013.08.07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	617,400	
2013.09.04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	3,593,700	
2013.10.01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지출(10월)	617,400	
2013.11.06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(11월)	617,400	
2013.12.04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수수료(12월)	3,593,700	

집행일	예산과목	적 요	집행금액(원)	비고
2014.01.07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4.02.06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47,500	
2014.03.04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3,593,700	
2014.04.09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4.05.14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4.06.11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3,593,700	
2014.07.10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4.08.07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4.09.04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(9월분)	3,593,700	
2014.10.07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(10월)	617,400	
2014.10.07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추가 수수료	1,069,600	
2014.11.04	사무관리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지출(7월)	411,600	
2014.11.05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(11월)	617,400	
2014.12.03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(12월)	3,593,700	
2015.01.07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	617,400	
2015.02.03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(2월) 수수료	617,400	
2015.03.05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(3월) 수수료지출	3,593,700	
2015.04.01	공공운영비	○○○ 수질검사(4월) 수수료 지출	617,400	

2. 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의하면,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「2013~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·조례·규칙·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

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에서 정한 “세출예산 성질별 분류”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수질검사 시험·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는 사무관리비(201-01)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○○○는 2013.1. ~ 2015.4.월까지 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를 공공운영비(201.02)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, 총 30건의 ○○○ 수질검사 수수료 중 6건 3,528,700원은 사무관리비(201.01)로, 22건 39,587,600원은 공공운영비(201.02)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수질검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(201.01)에 편성하도록 하고, 세출예산 집행시 예산과목이 적정성 여부 확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6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3년

【행정상 조치】 시정

【재정상 조치】 추정 20,000원, 회수 10,000원

【제 목】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국내 출장여비 부정 집행현황

적요	출장자	출장기간	일수	출장지	지급액(원)	지급일	비고
○○○ 출장여비	○○○	2013. 3. 7.	1일	강릉	40,000	2013. 3. 11.	공용차량 이용

2. 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(성실의 의무), 「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8조(출장공무원), 「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에 따르면,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(이하 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,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공무원은 여비·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

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(대통령령 제24298호, 2013. 1. 9.)에 따르면, '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,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

○○○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'○○○ 출장여비'를 집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므로 일비의 2분의 1인 10,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, 20,000원을 적용하여 10,000원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과 지급된 출장여비 10,000원, 가산징수 20,000원을 회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여비를 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7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4년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

【제 목】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☆☆☆ 제작 계약현황

연도별	구분	계약부서	계약명	계약금액(원)	계약일	도급업체
계		2건		39,520,000		
2014	물품	○○○	○○○ 제작	19,760,000	2014. 2. 4	(주)○○○
2014	물품	○○○	○○○ 제작	19,760,000	2014.12.22	(주)○○○

2. 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의하면,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, ○○○에서는 2014년 2회에 걸쳐 '○○○ 제작'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면서 시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【처 분 요 구】

-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.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

【일련번호: 8】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기관·부서명】 ○○○

【시행년도】 2014년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

【제 목】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

【위법·부당내용】

1. 현 황

○ 세출예산 집행과목 현황

연도별	적 요	지급액(원)	지출과목	적정지출과목
2014	○○○ 전기요금	149,180	일반운영비- 사무관리비	일반운영비- 공공운영비

2. 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8조제2항 및 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·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, 2014.7.30) 제6조에서 정한 【별표 12】의 '세출예산 성질별 분류'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(201-01), 공공운영비(201-02), 행사운영비(201-03)로 대분류하고, 사무관리비(201-01)는 일반수용비, 위탁교육비, 운영수당, 피복비, 급량비,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고, 공공운영비(201-02)는 우편물 발송대,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, 전기료, 가스료 및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, 연료비, 시설장비유지비, 차량·선박비,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,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,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·조례·규칙·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, ○○○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.11.3. '○○○ 전기요금' 1건 149,180원을 공공운영비(201-02)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사무관리비(201-01)에서 집행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【처분요구】

-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,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.